



삼일회계법인

Korean Tax Update Samil Commentary

November 14, 202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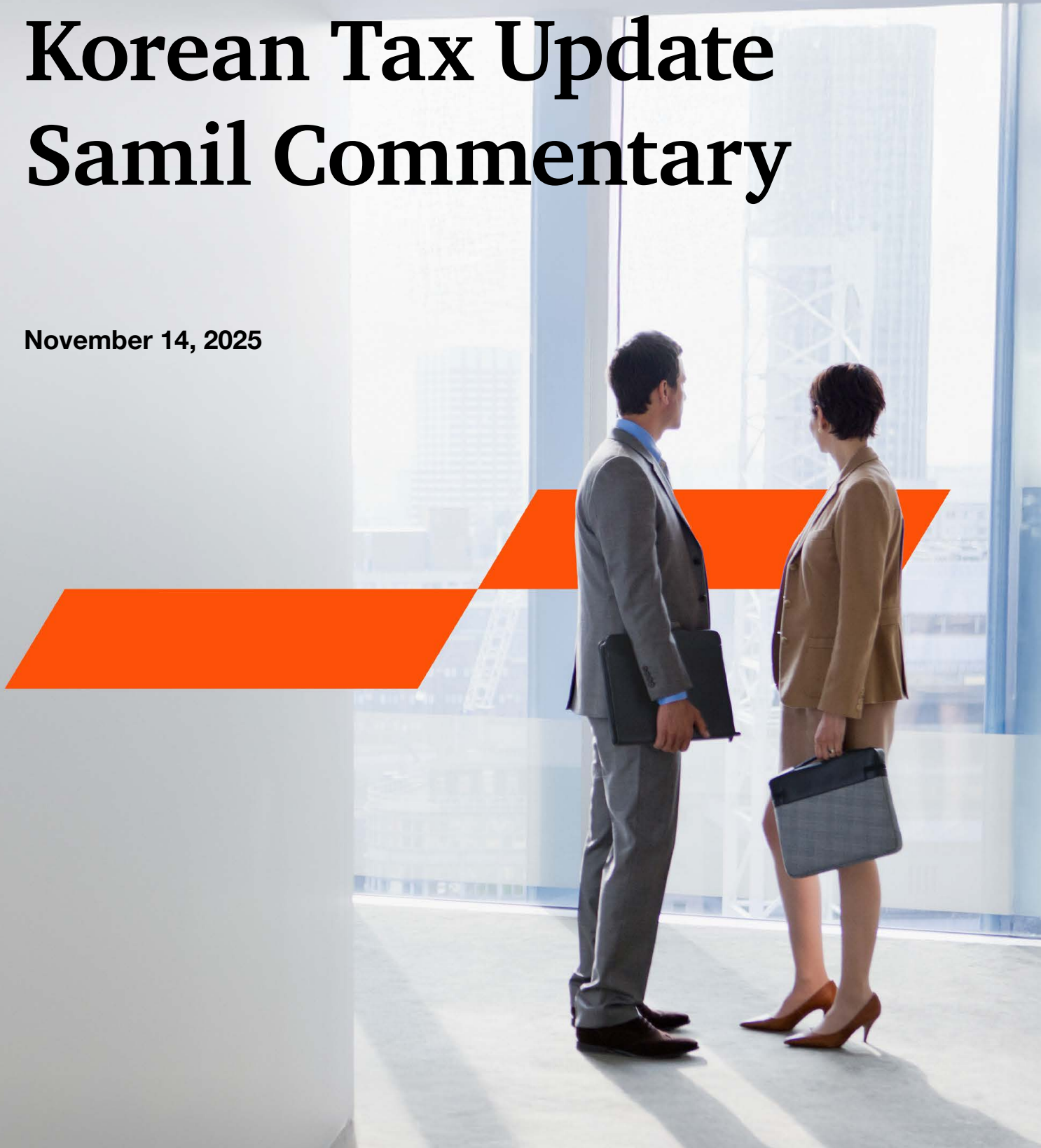


Table of contents

01 Tax News	3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국세청, 국세행정 운영방안 주요 내용• 국세청, 투자확대·일자리창출 중소기업 세정지원 안내• 행정안전부, 법인지방소득세 세율 인상 등 지방세법 개정 추진• 국세청, 시 중소기업 정기 세무조사 제외·유예 등 세정지원 실시	
02 최신 예규·판례	10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제2차 납세의무자에 대해 과세예고통지를 생략한 과세처분의 위법 여부•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세액공제 이월액의 공제범위 계산방법• 임직원 가족 할인액의 근로소득 비과세 여부	

01 Tax News

국세청, 국세행정 운영방안 주요 내용

임광현 국세청장이 2025년 11월 3일 취임 후 첫 전국 세무관서장 회의를 개최하고 국세행정 AI 대전환·체납관리 혁신방안·현장 상주조사 최소화 방안 등 국세행정의 패러다임 전환을 위한 「국세행정 운영방안」을 발표하였으며, 「국세행정 운영방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음.

중점 추진과제

주요 내용

국세행정 AI 대전환

AI 대전환으로 세계 최고의 AI 국세행정 구현

- (추진 방향) 대대적 투자와 개혁을 통해 납세서비스·세무조사·체납관리·신고관리 등 모든 세정 프로세스를 AI 중심으로 전면 개편

대표 과제	주요 내용
AI 세금업무 컨설턴트	세법·예규·판례 등 방대한 세무지식을 학습한 생성형 AI가 개별 납세자 정보를 바탕으로 개인별 맞춤 상담 서비스 상시 제공 → 세무대리인 조력을 받기 어려운 납세자가 무료 상담 후 편리하게 신고
AI 탈세적발 시스템	과거 조사사례와 조사분야 업무 숙련자의 노하우를 학습한 AI가 사람이 찾기 어려운 새로운 유형의 탈루혐의점 예측 및 조사대상자 선정 → 조사선정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신종탈루까지 탐지하여 탈세대응 역량 강화
AI 자료처리 어시스턴트	AI 에이전트가 세금계산서·신용카드·현금영수증 등 대량의 과세자료를 분석하고 과세실익을 스스로 판단하여 결의서까지 자동으로 작성 → 대량자료 검토에 소요되는 직원 업무량을 감축하여 핵심업무에 전념 가능

- (추진 일정) 인프라 구축을 위한 예산확보를 최대한 신속하게 진행*하여 2026~2027년 과제 개발 및 2028년 본격적인 AI 서비스 개통 추진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시 ISP사업(2025년) → ISMP사업(2026년) → 본사업 수행(2027년)

국세행정 AI 대전환을 치밀하게 준비

- (인프라 구축) 과세정보를 보호하고 국세업무 특화모델을 활용하기 위해 최신 GPU를 확보하여 '국세청 전용 AI 인프라' 구축
- 국내·외 최신 생성형 AI 모델(Foundation Model) 적용사례를 벤치마킹하고 기술검증을 실시하여 국세청에 최적화된 AI 모델 도입

중점 추진과제

주요 내용

국세행정 AI 대전환

- (AI 과제개발) 내부 컨트롤타워로 「AI 대전환 추진단」을 구성·운영하고 AI 대전환 10대 과제를 중심으로 세부과제 발굴
- AI 대전환 [3대 분야 - 10대 과제]

납세서비스 혁신	① AI 전자신고 ② AI 세무컨설팅 ③ 과세자료 사전공개
공정과세 구현	④ AI 신고검증 ⑤ AI 탈세적발 ⑥ AI 체납관리
세정 효율화	⑦ AI 신고관리 ⑧ AI 자료처리 ⑨ AI 업무지원 ⑩ AI 민원로봇

AI 대전환을 위한 추진기반 마련

- (AI 인력 양성) 석·박사급 AI 전문가 총원 추진 및 생성형 AI 실무사례 발굴과 변화관리를 이끌어갈 AI 크루 300명 선발
- (보안체계 고도화) 화이트 해커를 활용하여 해킹 대응을 강화하고 개인정보유출 실시간 관리 및 AI 보안감사로 내부 자료유출 방지
- (데이터 관리) AI 학습에 활용되는 데이터의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 기록 및 증빙자료 관리실태를 점검하고 기록관리 정형화 추진

합리적 세정 구현

빠른 민생 회복에 세정역량 집중

- (다각적 세정지원) 경기침체·재난·재해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에게 환급금 조기지급·납부기한 연장·납세담보 면제* 등으로 자금유동성 제공
*2025년 7월 신청분부터 납세담보 면제기준 7천만 원 → 1억 원 상향 적용
- (세무검증 부담 완화) 영세 소상공인이 생업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신고내용확인 선정 제외(부가가치세·종합소득세)·정기 세무조사 유예* 실시
*매출액 10억 원 미만인 소상공인(개인 + 법인)에 대해 2026년 상반기까지 적용

맞춤형 지원을 통해 기업하기 좋은 세정환경 조성

- (신성장 뒷받침) AI 중소기업에 R&D 세액공제 등 세제혜택을 안내하기 위한 전용상담창구 신설 및 세무검증도 최소화*
*창업 5년 이내 스타트업은 정기조사 선정 제외, 그 외 AI 중소기업은 최대 2년간 정기조사 유예
- (수출기업 지원) 관세피해 등으로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수출 중소·중견기업에 대해 자금유동성 지원* 세무검증 배제 등 실시
*법인세 납부기한 3개월 직권연장(중간예납 2개월)·환급금 조기지급(신고기한 후 30일 → 5일)

중점 추진과제

합리적 세정 구현

주요 내용

- (해외진출기업 보호) 이중과세와 같은 현장의 고충은 전략적 APA 실시와 양자교류 다자회의체 참여 등 실용적 세정외교로 해결
- 현지 세무애로는 국세관이 사안별 액션플랜을 수립하여 대응하고 교민·진출기업의 세정수요가 많은 지역에 국세관 신설 추진

납세자의 불편을 적극 해소하는 친(親) 납세자 세정

- (세무조사 관행 혁신) 정기 세무조사 시 조사팀이 기업에 상주하는 기간을 최대한 단축하는 등 조사방식을 납세자 관점에서 개선
- (세정 집행과정 관리) 납세자보호담당관의 세무조사 참관 대상을 확대*하여 세무조사 집행과정의 납세자 불편사항 적극 해소

*업종별 참관대상 수입금액 기준(현, 도매 6억 원·제조 3억 원 이하 등)을 대폭 상향 추진

공정 세정 실현

국세 체납관리 체계를 전면적으로 혁신

- (전수확인 실시) 국세 체납관리단을 신설하여 체납자(133만 명, 110조 원) 전수 실태확인을 실시하고 유형분류를 통해 맞춤형 징수체계 구축
- (악의적체납자 엄단) 고액체납 발생 즉시 '실태확인 → 추적조사 → 체납징수'까지 논스톱 실시하는 고액체납자 추적 특별기동반* 가동

*서울청·중부청 각 2반, 나머지 5개 지방청 각 1반 설치(1반당 6명씩 총 54명)

- (징수인프라 강화) 재산은닉 혐의가 있는 체납자에 대한 금융거래정보 조회범위* 확대 (금융실명법 개정) 및 추적조사 전담인력 증원 추진

*(현행) 체납자·배우자 또는 친·인척 → (확대) 체납자가 대표자인 법인·체납법인의 대표자

- 호주 등 외국 과세당국과 징수공조 실무협정*(MOU)을 새롭게 체결하여 고액·상습체납자의 해외 은닉재산 환수 기반 마련

*호주와 MOU 신규 체결(2025년 9월), 아시아 지역 국가와 신규체결 추진 중

경제회복의 걸림돌이 되지 않는 세무조사 운영

- (조사규모 관리) 조사규모*는 예년 수준을 유지하되 대·내외 경제여건과 인력 상황 조사 필요성 등을 고려하여 유연하게 운영

*(2022년) 14,174건 → (2023년) 13,973건 → (2024년) 13,980건 → (2025년 계획) 14,000건 수준

- (성실신고 지원) 과거 세무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신고 시 유의사항을 홈택스에서 사전 안내하여 납세자의 반복적 신고 실수 방지

중점 추진과제

주요 내용

공정 세정 실현

악의적·지능적 탈세에 엄정하게 대응

- (불공정행위 척결) 공정경쟁을 훼손하는 기업의 세금탈루와 주식시장을 교란시키고 사익을 편취하는 불공정 자본거래에 엄정 대응
*시세조종 목적의 허위공시 기업·먹튀 전문 기업사냥꾼·경영지배권 남용 기업 등
- (민생침해 엄단) 서민들의 경제적 어려움을 악용하여 부당이익을 취하거나 우월적 지위를 남용하여 폭리를 취하는 행위 등 점검
*서민을 대상으로 고율 이자 수취·불법 채권추심을 일삼는 불법사금융업자 등
- (신종·역외탈세 근절) 가상자산을 이용하여 소득을 은닉*하거나 위장거래를 통해 국내재산을 해외로 빼돌리는 국부유출 행위 등 강력 대응
*현금매출을 고의로 신고 누락한 뒤 가상자산 취득 및 해외 인출하여 수익 은닉 등
- (부동산탈세 차단) 초고가주택 거래, 외국인·연소자 주택취득 과정의 자금출처와 고가아파트 증여세 회피 등 부동산거래 관련 탈세 집중 점검
*시세보다 낮은 가격으로 신고하거나 담보된 대출·전세금을 부모가 대신 변제하는 행위 등

안정적 세수확보

성실납세를 최대한 지원하여 자납세수 극대화

- (신고안내 강화) 납세자 맞춤형 신고도움자료를 확대 제공하여 업무무관비용 공제·공제한도 초과 등 실수로 인한 과소신고 방지
- (간편신고 확대) 복잡한 세법 규정으로 국민들이 어려움을 겪는 양도소득세·상속세를 편리하게 신고할 수 있도록 전자신고 개선
 - (양도세) 물건정보·양도일자 등 최소정보 입력만으로 신고유형·적용세율 자동선택
 - (상속세) 상속재산 및 사전증여재산을 별도로 입력할 필요 없이 전자신고 시 자동채움

공제·감면 제도 관리로 재정누수 최소화

- (사후관리 실시) 보유 과세자료와 연계하여 신고검증을 강화하고, 신규 검증항목을 지속 개발하는 등 공제·감면 악용사례* 원천 차단
*사망자·소득기준 초과자 등 부당 인적공제, 불법 브로커를 통한 R&D 부당 공제 등
- (조세지출 정비) 현재 시행 중인 조세지출 전(全) 항목을 심층 분석·평가하여 실효성이 낮은 공제·감면제도 발굴 및 정비 건의

국세청, 투자확대·일자리창출 중소기업 세정지원 안내

국세청이 다음과 같이 투자를 확대하거나 또는 일자리를 창출하는 중소기업에 대해 2024년 귀속 법인세·종합소득세 정기 세무조사 대상 선정에서 제외하는 세정지원을 제공할 계획임.

구분	주요 내용								
투자 확대	2024사업연도 귀속 수입금액이 1,500억 원 이하인 조특법상 중소기업(유예기업 제외) 중 2026년 투자금액을 2025년 대비 5%~20% 이상 증가시킬 계획이 있어 투자확대 계획서를 제출(제출기간: 2025년 11월 3일 ~ 2025년 12월 1일)하고 그 계획을 이행한 법인 및 개인사업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법인) 자산총액 2천억 이상 법인·전문인적 용역제공 법인은 수입금액 500억 원 미만 (개인) 전문직 사업자의 경우 수입금액 500억 원 미만 [수입금액 규모별 투자금액 기준 비율] <table border="1"> <tr> <td>2024사업연도 수입금액</td> <td>500억 원 미만</td> <td>500억 원 이상 ~ 1,500억 원 이하</td> </tr> <tr> <td>일반기업</td> <td>10% 이상</td> <td>20% 이상</td> </tr> <tr> <td>지역사업장 투자기업</td> <td>5% 이상</td> <td>15% 이상</td> </tr> </table> *수도권(서울·인천·경기도) 이외 지역사업장에 투자 시 기준비율 5% 완화 (지역사업장 외 수도권 사업장 투자 시 지역투자 금액 비율이 80% 이상이면 지역투자기업 간주) *체납·조세범·분식결산 등 불성실 사업자와 성실신고확인대상자로서 성실신고 확인서를 미제출한 개인사업자 제외	2024사업연도 수입금액	500억 원 미만	500억 원 이상 ~ 1,500억 원 이하	일반기업	10% 이상	20% 이상	지역사업장 투자기업	5% 이상
2024사업연도 수입금액	500억 원 미만	500억 원 이상 ~ 1,500억 원 이하							
일반기업	10% 이상	20% 이상							
지역사업장 투자기업	5% 이상	15% 이상							
일자리 창출	2024사업연도 귀속 수입금액이 1,500억 원 이하인 조특법상 중소기업(유예기업 제외) 중 2026년에 상근근로자 수를 2025년 대비 2%·3%(최소 1명 이상) 증가시킬 계획이 있어 일자리창출 계획서를 제출(제출기간: 2025년 11월 3일 ~ 2025년 12월 1일)하고 그 계획을 이행한 법인 및 개인사업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법인) 자산총액 2천억 이상 법인·전문인적 용역제공 법인은 수입금액 500억 원 미만 (개인) 전문직 사업자의 경우 수입금액 500억 원 미만 [수입금액 규모별 일자리창출 기준 비율] <table border="1"> <tr> <td>2024사업연도 수입금액</td> <td>500억 원 미만</td> <td>500억 원 이상 ~ 1,500억 원 이하</td> </tr> <tr> <td>기준 비율</td> <td>2% 이상</td> <td>3% 이상</td> </tr> </table> *근로기준법 제43의 2조에 따라 고용노동부로부터 종업원의 임금을 체불한 사업주 기업으로서 명단이 공개된 법인·개인사업자 제외 *체납·조세범·분식결산 등 불성실 사업자와 성실신고확인대상자로서 성실신고 확인서를 미제출한 개인사업자 제외	2024사업연도 수입금액	500억 원 미만	500억 원 이상 ~ 1,500억 원 이하	기준 비율	2% 이상	3% 이상		
2024사업연도 수입금액	500억 원 미만	500억 원 이상 ~ 1,500억 원 이하							
기준 비율	2% 이상	3% 이상							

행정안전부, 법인지방소득세 세율 인상 등 지방세법 개정 추진

행정안전부는 법인지방소득세 세율 인상·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 간 부동산 저가거래의 증여 간주 등을 포함한 지방세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2025년 10월 16일 국회에 제출하였으며, 이번 지방세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음.

구분	개정안 주요 내용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 부동산 등 유상 거래 시 증여의제 (안 제7조 제11항 제4호 단서 신설)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의 부동산등을 취득하는 경우, 해당 부동산등의 취득을 위하여 그 대가를 지급한 사실이 증명되더라도, 그 대가와 시가인정액의 차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인 경우 증여로 취득한 것으로 간주함.
회원제 골프장 승계취득 시 취득세 증가 (안 제13조 제5항)	회원제 골프장업을 등록하는 경우 및 사실상 회원제 골프장으로 사용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회원제 골프장업 및 사실상 회원제 골프장을 승계취득하는 경우에도 취득세를 증가하도록 함.
법인 등이 취득한 주택이 취득한 후에 취득세 증가대상에 해당하게 된 경우의 신고·납부 (안 제20조 제2항)	법인 등이 취득한 주택이 취득한 후에 취득세 증가대상에 해당하게 된 경우, 종전에는 증가세액 또는 부족세액을 추징하고 가산세를 부과하도록 한 것을, 증가 대상에 해당하게 된 사유의 발생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증가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을 신고·납부하면 가산세를 부과하지 않도록 함.
법인지방소득세 세율 조정 (안 제103조의 20 제1항)	1) 일반 내국법인의 경우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 구간 중 2억 원 이하는 1%, 2억 원 초과 200억 원 이하는 2%, 200억원 초과 3천억 원 이하는 2.2%, 3천억 원 초과는 2.5%로 법인지방소득세율을 각각 0.1%p씩 인상함. 2) 부동산 임대업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내국법인 등의 경우 법인세 과세표준 구간 중 200억 원 이하는 2%, 200억원 초과 3천억 원 이하는 2.2%, 3천억 원 초과는 2.5%로 법인지방소득세율을 각각 0.1%p씩 인상함.
위탁자가 신탁재산의 재산세 등을 체납한 경우 수탁자 물적납세의무 부과대상 확대 (안 제119조의 2 제1항)	신탁재산에 대한 과세채권을 확보하기 위하여 위탁자가 신탁재산에 대한 재산세, 납부지연가산세 또는 체납처분비를 체납한 경우, 위탁자의 재산세등을 납부할 의무가 부과되는 수탁자의 신탁재산에 해당 신탁재산의 관리·처분·운용 또는 개발 등을 통하여 수탁자가 얻은 재산을 포함함.

※ 이번 지방세법 일부 개정법률안은 지난 9월 3일 국회에 제출된 법인세법·소득세법·종합부동산세법 일부 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2656호·제12655호·제12658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므로, 해당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국세청, AI 중소기업 정기 세무조사 제외·유예 등 세정지원 실시

국세청이 AI 3대 강국 도약과 AI 중소기업의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AI 스타트업 등 총 4천 8백여 개 중소기업을 세정지원 대상으로 선정하여 2025년 10월 27일부터 다음과 같은 세정지원을 실시함.

유형	세정지원 내용
세무검증 최소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성장 단계별로 구분하여 AI 스타트업 중소기업*은 정기 세무조사 선정 제외, 그 외 AI 중소기업은 납세자 신청에 따라 세무조사 착수 예정일로부터 최대 2년간 정기 세무조사 착수 유예 (순환조사 대상은 제외) *사업 영위 기간이 창업일부터 5년 이내인 AI 중소기업 명백한 탈루 혐의가 없는 경우에는 신고내용확인* 대상에서도 제외 *법인세 신고 후 불성실 신고 혐의 법인에 대해 서면으로 신고내용 적정 여부 검증
R&D 등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연구·인력개발비세액공제 사전심사 및 법인세 공제·감면 컨설팅 우선 처리
유동성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납부기한 연장·납세담보 면제·압류 및 매각 유예·경정청구 우선 처리·법인세 및 부가가치세 환급금 조기 지급 등을 통해 기업 자금의 유동성 지원
세무쟁점 상담	<ul style="list-style-type: none"> AI 중소기업의 세무쟁점을 신속히 해소하기 위해 홈택스 전용상담 서비스 제공 - 전국 세무서 법인세과에 AI 기업 전용상담창구를 설치하여 AI 기업의 투자·고용 관련 세제혜택 등을 안내하고 애로사항을 수집하여 제도 개선에 반영 예정

02

최신 예규·판례

제2차 납세의무자에 대해 과세예고통지를 생략한 과세처분의 위법 여부

(대법2024두47074, 2025. 9. 4.)

쟁점사항

국세기본법에서는 납세고지하려는 세액이 100만 원 이상인 경우에는 감사원법에 따른 시정 요구에 따라 과세처분하는 경우 등의 예외사유가 없다면,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미리 납세자에게 그 내용을 서면으로 통지(이하 '과세예고통지')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국기법 §81의 15 ① 3호), 이번 대법원 판결의 쟁점은 처분청이 소외 법인의 과점주주이자 제2차 납세의무자인 원고에게 소외 법인이 체납한 국세를 납부할 것을 고지하면서 과세예고통지를 생략한 경우, 제2차 납세의무자에 대해 과세예고통지를 생략한 과세처분이 위법한지 여부인.

판결요지

이에 대해 원심 판결은 국세기본법에서 제2차 납세의무자에 대한 납부고지를 과세예고통지의 예외 사유로 명시하고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제2차 납세의무의 부종성과 보충성을 근거로 과세예고통지 대상이 아닌 것으로 보는 것은 납세자에게 불리한 확장해석이므로, 제2차 납세의무자에 대해 과세예고통지를 생략한 과세처분은 위법하다고 판단하였으나(대전고법 2023누12437, 2024. 5. 30.), 이와 달리 대법원은 제2차 납세의무는 조세징수의 확보를 위해 원래의 납세의무자와 특수관계에 있는 제3자에게 원래의 납세의무자로부터 징수할 수 없는 세액을 한도로 보충적으로 납세의무를 부담하게 하는 제도로서, 제2차 납세의무자에 대한 납부고지는 형식적으로는 독립된 과세처분이나, 실질적으로는 이미 확정된 주된 납세의무에 대한 징수절차의 성격을 가지므로, 이미 확정된 주된 납세의무의 징수 단계에 이르러 제2차 납세의무자에게 과세예고통지가 별도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하면서, 제2차 납세의무자에 대해 과세예고통지를 생략한 과세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한 원심 판결을 파기 환송함.

시사점

이번 대법원 판결은 주된 납세의무자가 아닌 제2차 납세의무자에 대한 납부고지에 대해서는 과세예고통지의 대상으로 볼 수 없다고 명시적으로 판단한 최초의 대법원 판결로서, 이번 판결에 따라 주된 납세의무자는 과세예고통지를 생략한 과세처분에 대해 절차적 위법 여부를 다룰 수 있는 반면, 제2차 납세의무자는 과세예고통지를 생략한 납부고지에 대해 그 절차적 위법을 다룰 수 없다는 점을 참고할 필요가 있음.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세액공제 이월액의 공제범위 계산방법

(서면-2024-법규법인-0347, 2025. 8. 19.)

쟁점사항

현행 법인세법은 적격 합병에 의한 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세액공제를 적용함에 있어서 법인세 최저한세액에 미달하여 공제받지 못하고 이월된 미공제액(이하 '이월공제액')에 대해서는 '승계받은 사업부문에 대하여 계산한 법인세' 최저한세액의 범위에서 공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법령 §81 ③ 2호 나목, 이하 '쟁점규정'), 이 때 '승계받은 사업부문에 대하여 계산한 법인세'를 어떻게 계산하는지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규정이 없는 바, 이번 유권 해석의 쟁점은 '승계받은 사업부문에 대하여 계산한 법인세'를 피합병법인의 승계사업 부문을 구분경리하여 피합병법인의 법인세를 별도로 계산해야 하는지 아니면 합병법인의 전체 산출세액을 합병법인과 피합병법인의 소득금액 비율로 안분하여 계산하는지 여부임.

회신요지

이에 대해 이번 유권해석은 합병법인이 공제할 수 있는 피합병법인의 이월공제액 공제한도는 합병법인의 전체 산출세액을 합병법인과 피합병법인의 소득금액 비율로 안분하여 계산하도록 회신하고 있으며, 이는 합병법인이 승계한 피합병법인의 결손금은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사업의 소득금액을 한도로 공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법법 §45 ②), 피합병법인의 이월공제액도 피합병법인으로 승계받은 소득금액 비율로 안분한 산출세액을 한도로 공제하는 것이 이월결손금과 이월공제액의 공제한도를 모두 소득금액을 기준으로 산정 한다는 점에서 타당할 수 있고, 이와 달리 피합병법인의 승계사업 부문에 대한 법인세를 별도로 계산하기 위해서는 피합병법인의 소득금액 외에도 이월결손금·소득공제 및 최저한세 등에 대해서도 각각 별도로 재계산해야 하는 실무상 어려움 등이 배려된 합리적인 해석으로 판단됨.

시사점

이번 유권해석은 적격 합병에 의한 합병법인이 합병 전에 피합병법인이 법인세 최저한세액에 미달하여 공제받지 못하고 이월된 미공제액(법령 §81 ③ 2호 나목)뿐만 아니라 결손 등으로 인해 납부할 세액이 없어 이월된 미공제액(법령 §81 ③ 2호 다목)을 승계하여 공제하는 경우에 대해서도 피합병법인의 승계사업 부문을 구분경리하여 재계산한 법인세가 아니라 합병법인의 전체 산출세액을 합병법인과 피합병법인의 소득금액 비율로 안분하여 계산한 법인세를 합병법인의 공제한도로 적용할 수 있음을 의미하고 있으며, 한편 현행 법인세율이 4단계 초과 누진세율 구조임을 고려할 때, 합병법인과 피합병법인이 결손법인이 아닌 흑자법인인 경우 등을 가정한다면, 이번 유권해석에 따라 피합병법인의 사업부문을 포함한 합병법인의 전체 법인세를 기준으로 안분 계산한 공제한도가 피합병법인의 사업부문만으로 법인세를 재계산한 공제한도보다 더 크게 산정될 수 있다는 점도 같이 참고할 필요가 있음.

임직원 가족 할인액의 근로소득 비과세 여부

(사전-2025-법규소득-0512, 2025. 8. 18.)

쟁점사항

현행 소득세법은 사업자나 법인이 생산·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이하 '자사제품등')을 임원 또는 종업원(이하 '임원등')에게 시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판매 또는 제공하는 방식으로 지원 함으로써 해당 임원등이 얻는 이익을 근로소득으로 보되(소법 §20 ① 6호·소령 §38 ③ 1호), 모든 임원등에게 공통으로 적용되는 기준에 따라 임원등 본인이 소비하는 것을 목적으로 제공받거나 지원을 받아 구입한 자사제품 등에 대해서는 일정기간 동안 재판매를 금지하는 조건으로 시가의 20% 또는 연간 240만 원을 한도로 근로소득을 비과세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소법 §123호 처목 및 소령 §17의 5, 이하 '쟁점규정'), 이번 유권해석의 쟁점은 자사제품 등을 임원등의 가족에게 할인 판매한 경우에도 임원등의 근로소득에 포함되는지 여부와 임원등의 가족이 소비한 경우에도 비과세되는 근로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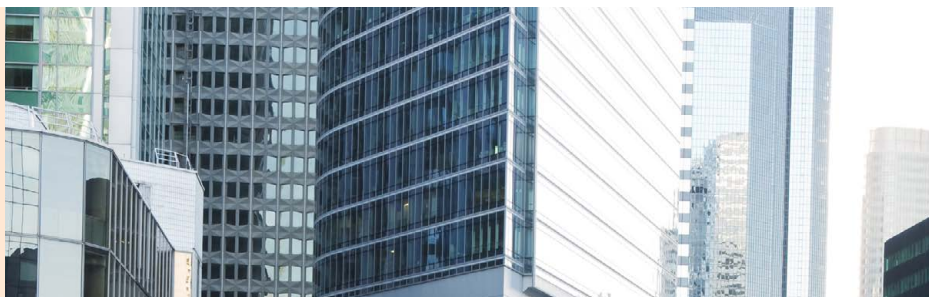
회신요지

이에 대해 이번 유권해석은 임원등의 가족이 시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구입한 재화의 할인 금액은 임원등의 근로소득에 포함되고, 임원등이 할인하여 구입한 재화를 임원등의 가족이 소비하는 경우에는 근로소득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없다고 회신하고 있는 바, 이는 근로를 전제로 밀접히 관련되어 지급되는 대가는 근로소득의 범위에 포함되는 것이므로 가족 할인 또한 임원등의 근로 제공을 전제로 제공받는 이익으로 보아 근로소득으로 봄이 타당하고(대법2007두1941, 2007. 10. 25. 및 소법 집행기준 20-38-1 ②), 쟁점규정에서 임원등 본인이 소비하고 일정기간의 재판매를 금지하는 것은 가족이 아닌 임원등 본인의 사용에 한정하여 비과세 적용을 허용함이 타당하다는 해석에서 비롯된 회신으로 판단됨.

시사점

이번 유권해석은 임원등의 할인금액에 대한 근로소득 비과세 기준이 소득세법에 신설(2024. 12. 31. 개정)된 후 가족 할인금액은 비과세대상에서 제외된다는 점을 확인한 최초의 유권해석으로서, 임원등과 임원등의 가족에게 자사제품 등을 할인하여 지원하는 복지제도를 운영 중인 기업의 경우에는 이번 유권해석에 따라 임원등 본인이 아닌 임원등의 가족에게 제공할 할인금액에 대해서는 해당 임원등의 근로소득에 포함하여 원천징수 및 연말정산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의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본 최신 예규·판례 내용은
유권해석·결정례·판례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하여 작성된 것으로,
실제 적용에 있어서는 반드시
Tax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Contacts

조한철 Partner

han-chul.cho@pwc.com
02-3781-2577

정재훈 Partner

jae-hoon_3.jung@pwc.com
02-709-0296

김태훈 Partner

taehoon.kim@pwc.com
02-3781-2348

조영현 Director

young-hyun.jo@pwc.com
02-3781-9238

이민재 Director

min-jae_1.lee@pwc.com
02-709-8320

신예지 Senior-Manager

yeji.shin@pwc.com
02-709-0659



삼일PwC 카카오톡 채널을 추가하세요.

다양한 산업과 경영환경에 대한 인사이트와
글로벌 최신 트렌드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삼일회계법인

삼일회계법인 뉴스레터는 삼일회계법인의 고객을 위한 일반적인 정보제공 및 지식전달을 위하여 배포되는 것으로, 구체적인 회계문제나 세무이슈 등에 대한 삼일회계법인의 의견을 포함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삼일회계법인의 뉴스레터에 담긴 내용과 관련하여 보다 깊이 있는 이해나 의사결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반드시 관련 전문가의 자문 또는 조언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메일 수신을 원치 않으시면 [수신거부를 클릭](#)하십시오.

Samil PwC newsletter has been prepared for the provision of general information and knowledge for clients of Samil PwC, and does not include the opinion of Samil PwC on any particular accounting or tax issues. If you need further information or discussion concerning the content contained in the Samil PwC newsletter, please consult with relevant experts. If you don't want to receive this mail anymore, click here [unsubscribe](#).